

# 구미시 시민참여토론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  |
|----------|--|
| 의안<br>번호 |  |
|----------|--|

제출일자 2020. . .

제출자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 1. 수정이유

- 본 조례안은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보다는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에 맞게 조례 일부를 수정하고,
-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회의의 연간 개최횟수를 정하지 않고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며, 회의 참여자 중 관련분야 전문가를 시장뿐 아니라 의장도 추천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함.

## 2. 수정 주요내용

- 시민참여토론회의의 정의 수정(안 제2조제1호)
- 회의의 기능 일부 수정(안 제4조제1호)
- 회의 개최횟수 수정(안 제5조제1항)
- 회의 참여자 중 관련분야 전문가 추천에 의장 추가(안 제5조제3항)
- 기타 경미한 자구 수정

## 구미시 시민참여토론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시민참여토론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합의를 도출하는”을 “의견을 수렴하는”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합의를”을 “의견 수렴을”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를 “회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을 “시장 및 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역별”을 “각 지역별”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제 정 안                                                                                                 | 수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정의) -----<br>-----.                                             |
| 1. “시민참여토론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란 구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직접 참여하여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u>합의를 도출하는</u> 회의 형태를 말한다. | 1. -----<br>-----<br>-----<br>----- <u>의견을 수렴하는</u> -----<br>-----. |
| 2. 3. (생략)                                                                                            | 2. 3. (현행과 같음)                                                      |
| 제4조(기능) 회의는 지역사회 화합과 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제4조(기능) -----<br>-----<br>-----.                                    |
| 1. <u>각계각층의 합의를 통한</u> 지역사회 화합 및 발전방안 제시                                                              | 1. ----- <u>의견 수렴을</u> -----<br>-----                               |
| 2. ~ 5. (생략)                                                                                          | 2. ~ 5. (현행과 같음)                                                    |
| 제5조(운영) ① <u>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u>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제5조(운영) ① <u>회의는</u> -----<br>-----<br>--.                          |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
| ③ 회의 참여자는 일반시민과 관련분야 전문가를 공개 모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분야 전문가는 <u>시장</u> 이 추천할 수 있다.                             | ③ -----<br>-----<br>-----<br><u>시장 및 의장</u> -----.                  |
| ④ 회의 참여자 선정 시 <u>지역별</u> ,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 <u>각 지역별</u> -----<br>-----<br>-----.                       |

## 구미시 시민참여토론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주요 현안에 대하여 시민의 지혜와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한 시민참여토론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참여토론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란 구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직접 참여하여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 형태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회의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3. “토론주제 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란 회의결과를 반영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민 참여 확대 및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회의는 지역사회 화합과 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통한 지역사회 화합 및 발전방안 제시
2. 시정의 중요사항에 관한 발전방향 논의
3. 시민의 이익과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4. 시정 현안과제, 쟁점사항 등의 해소방안 제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운영) ① 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상정할 의제는 시민, 단체 등이 제안한 의제 중에서 시장이 선정한다.

③ 회의 참여자는 일반시민과 관련분야 전문가를 공개 모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분야 전문가는 시장 및 의장이 추천할 수 있다.

④ 회의 참여자 선정 시 각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결과 조치) ① 회의를 통하여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관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세부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이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는 회의결과에 대한 추진상황을 총괄부서에 제출하고, 총괄부서는 그 내용을 정기적으로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관리조례」에 따른다.

제8조(의견청취 등)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의제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회의 운영에 기여한 시민이나 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게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